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제347회 임시회
’16. 5. 4.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충 청 북 도 의 회
행정문화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78

2016. 5. 4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연철흠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4월 27일

-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연철흠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에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, 교육훈련을 통해 방범활동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(안 제3조~제4조)
○ 충청북도의 지도·감독 (안 제5조)
○ 모범자율방범대원 표창 등 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○ 금번 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활발한 범죄예방 활동과 교육훈련을 통한 방범활동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먼저 자율방범대의 정의를 살펴보면,

-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마을단위로 조직하여 관할 파출소와 상호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봉사조직으로,

- 한국의 자율방범활동은 1963년 경 지역주민들이 부족한 경찰력의 공백을 메우고 범죄피해를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의지로 주민야경제에서 출발하였으며, 1996년 8월 16일 자율방범대관리지침이 마련되면서 조직명칭을 “파출소자율방범대”로 통일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음.

○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 및 지원근거는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, 지방경찰청별로 ‘자율방범대 관리규칙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,

- 안 제3조 지원대상에 방범대의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, 범죄예방 캠페인 등 공익사업, 자율방범대원 교육사업으로 하였으며

-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가 활동이 부진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됨

○ 자율방범대는 현행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따라 포상, 보험가입 지원, 행정·예산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자율방범에 관한 조례

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,

- 법령 규율 및 자치경찰제와는 별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라고 할 것이며,
- 치안업무 성격상 경찰의 직무를 보조하는 자율방범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여타의 다른 자원봉사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음. 법적 규율이 없이 임의 단체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음

○ 정부 차원에서 경찰법에 자율방범대를 규정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율방범대 관련법을 제정하기 전이라도 충청북도는 자율방범연합회에 관하여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도내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이들에게 인권교육, 성교육 등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“생략”

5. **토 론 요 지** : “생략”

6. **심 사 결 과** : “원안가결”

7. **소 수 의 견 요 지** : “없 음”

8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“없 음”

9. **심사보고서 첨부서류**

○ 「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378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연철흠 의원 등 6명
발의연월일	2016년 4월 18일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(연철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78

발의연월일 : 2016년 4월 18일
발 의 자 : 연철흠, 임회무, 엄재창, 김영주, 윤은희, 최광옥, 이의영

1. 제정이유

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, 교육훈련을 통해 방범활동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(안 제3조~제4조)

나. 충청북도의 지도·감독 (안 제5조)

다. 모범 자율방범대원 표창 등 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(제정)

5. 관계법령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충청북도자율방범연합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(이하 “방범대”라 한다)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등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를 말한다.
2. “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”(이하 “연합회”라 한다)란 도내 시군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각 방범대의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
2. 범죄예방캠페인 등 공익사업
3. 자율방범대원 교육사업

제4조(지원범위 등)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육·훈련, 표창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제5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4. 그 밖에 대원 또는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으로 지원하는데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경우

제5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·감독을 해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해마다 연합회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관계기관과 협력)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·감독을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장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7조(표창) 도지사는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모범대원 등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연합회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·지원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원봉사활동의 범위)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
2. 지역사회개발·발전에 관한 활동
3.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
4.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
5.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
6.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
7. **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**
8.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
9.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
10. 문화·관광·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
11.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
12.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
13.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
14.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
15.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

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방범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범죄예방 등 캠페인 등 공익사업, 자율방범대원 교육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3조 지원대상

○ 안 제4조 지원범위 (장소제공, 교육, 훈련, 표창 등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 요인: 자율방범연합회 공익캠페인, 교육 등

나. 추계의 전제: 수시

다. 추계결과 : ‘16년도부터 향후 5년간 45,000천원 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 추계서 : 붙임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6년도)	2차년도 (2017년도)	3차년도 (2018년도)	4차년도 (2019년도)	5차년도 (2020년도)
세 출	45,000	9,000	9,000	9,000	9,000	9,000

6. 작성자 : 연철흠 의원